

2019년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공고

동대문구에서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에 관한 문제를 결정하고 추진하여 마을을 살기 좋은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주민활동을 지원하고자 「2019년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공모개요

- ☐ 사 업 명 : 2019년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 ☐ 접수기간 : 2019. 2 20.(수) ~ 3. 21.(목) 18:00까지
- ☐ 접수방법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www.seoulmaeul.org)

온라인 접수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로그인, 동대문구 공모사업 신청·접수

- ☐ 사업기간 : 2019. 4월(협약일) ~ 11. 30.
- ☐ 지원자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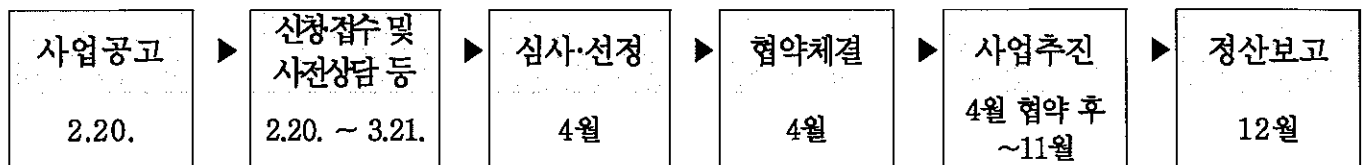
- 동대문구에 주소를 가지거나 동대문구가 생활권역(학교, 직장 등)인 3인 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
- 단체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하며, 주민모임은 단체회원이 아닌 3명 이상의 주민으로 구성

- ※ 세부 지원자격은 공모 유형에 따라 상이하므로 확인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
- ※ 한 사업에 대표제안자 및 실무책임자로 참여(신청)한 사람은 다른 사업에 대표제안자 및 실무책임자로 참여(신청)할 수 없음
- ※ 직계가족은 대표제안자 1인으로 간주함
- ※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 외국인도 참여 가능

☐ 사업대상 : 주민 주도로 추진하는 동대문구 특성에 적합한 마을공동체 사업

☐ 총사업예산 : 72,000천원

☐ 추진절차



2. 세부 공모계획

☐ 공모분야별 지원 자격

사업명	지원 자격
우리 마을 제안 사업	◆ 동대문구에 주소를 가지거나 동대문구가 생활권역(학교, 직장 등)인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 ◆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주민 모임 네트워크 사업	◆ 동대문구 및 서울시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경험이 있는 주민 모임 또는 단체로 마을주민모임, 마을사업을 하는 단체 3개 이상 ◆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행복한 골목 만들기 사업	◆ 저층주거지 골목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의지가 있고 해당 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활동근거가 있는 3인 이상의 주민모임 또는 단체(단체모임은 단체소개서 제출)로 마을공동체 사업 수행 경험이 있어야 함 ◆ 지역의 애착심 고취를 위한 특색 있고 활성화된 골목 만들기 실행으로 활동범위는 반경 50m 이내, 골목단위 거주민 간 협동으로 골목의 재구성, 골목반상회, 골목운영위원회 등 구성, 운영 지원 ◆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 자부담은 사업참여자의 재능활동 기부로 편성할 수 있음
단, 재능활동은 강의 및 아이돌보미 활동에 한함

□ 공모분야 및 지원금액

사업명	총예산	모임별 지원규모	사업내용
우리 마을 제안 사업	32,000천원	최대2,000천원	♦ 사람과 이웃관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주민모임 형성 지원 및 실행
주민 모임 네트워크 사업	20,000천원	최대5,000천원 (간사비 보조금 총액의 30%이내)	♦ 동네별/의제별 주민모임 상호연결 및 관계 형성하고 마을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지역생태계 조성
행복한 골목 만들기 사업	20,000천원	최대10,000천원 (실무책임자 활동비 보조금총액의 30%이내)	♦ 골목기반의 주민관계망 형성을 통하여 동네 의제를 발굴·실행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역량을 강화 및 골목이 주민이 되는 마을만들기의 토대 구축

□ 예산편성 기준

- 식비·다과비 : 보조금의 20% 내로 편성
- 강 사 비 : 보조금의 30% 내로 편성
- 업무추진비
 - 보조금의 15% 내로 편성
 - 대표제안자 3인과 대표간사(실무책임자)가 사업수행 시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부수적 경비
- 마을박람회 참여 예산 편성(필수)
 - 50천원 내로 마을박람회 홍보 및 체험부스 운영비 편성
- 열린마을강좌 예산 미편성
 - 구에서 진행하는 하반기 마을아카데미로 대체
 - 열린마을강좌는 필수사업으로 하반기 마을아카데미에 필히 참여해야 함

※ 기타 보조비목별 예산편성 집행기준은 붙임 문서 참고

□ 지원제외사업

- 전년도 마을공동체 사업협약 또는 보조금 교부 후 중도포기 모임/단체
- 사실상 특정정당 및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자 또는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직업훈련, 교과목 특기적성, 어학, 정보학 등 일반강좌 운영 사업

- 단순 친목회(동아리 모임) 또는 영리목적의 사적인 사업
- 1회성 행사 및 축제
- 사업의 공익성 및 도덕성이 현저히 결여된 경우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동일한 기간에 중복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 자부담 사업비를 보조금 지원액의 10%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사업

3.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9. 2. 20.(수) ~ 3. 21.(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우리마을제안 / 행복한 골목만들기 / 주민모임 네트워크 : 인터넷 접수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접수방법 」

홈페이지 접속 <http://www.seoulmaeul.org> ⇒ 홈페이지 회원가입 ⇒ 지원사업
⇒ 신청 및 접수 ⇒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공모 선택 ⇒ 신청하기

□ **제출서류**

구 분	제출서류
우리 마을 제안 사업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주민 모임 네트워크 사업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주민모임 연합 모임 소개서, 주민모임 개별 소개서
행복한 골목 만들기 사업	사업제안서, 사업계획서, 참여자 명단 및 업무분장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모임(단체) 및 골목 소개서

※ 단체지원 시 : 단체등록증 사본 각 1부.

4. 사전상담 지원 및 설명회

□ 사전상담 지원

- 신청기간 : 2019. 3. 4.(월) ~ 3. 21.(목)
- 상담대상 :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참여 희망 주민모임 또는 단체
단, 신규 사업자는 필수 참여, 연속 사업자는 참여 권장
- 상담내용 : 공모사업 안내 및 제안서 작성 방법 등 지원
- 상담신청 : 도시전략과 마을협치팀(☎2127-4982)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¹⁾(☎3394-5005)

< 서울시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온라인 신청방법 >

홈페이지 접속 <http://www.seoulmaeul.org> ⇒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상담메뉴의 “상담신청하기” 클릭 ⇒ 상담신청 정보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
만 3일 이내 1시간 상담진행

□ 공모사업 설명회

- 일 시 : 2019. 2. 26.(화) 10:00 ~ 12:00
- 장 소 : 구청 지하2층 사내아카데미
- 참석대상 :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주민 및 단체
- 내 용
 - 마을공동체 개념 및 동대문구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소개
 - 사업지원 절차 및 제안서 작성, 사업관련 질의응답 등
- 참여신청 : 도시전략과 마을협치팀(☎2127-4982)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3394-5005)
※ 사전 전화 신청 및 현장 신청 가능

1)2019년 동대문구 마을생태계조성 중간지원조직

5. 사업 심사 및 선정

☐ **심사절차** ※ 심사일정은 추후 통보(4월 예정)

○ 사업선정

구분	우리 마을 제안 사업	주 민 모 임 네트워크 사업	행복한 골목 만들기 사업
1차 (사전심사)	주민참여심사		현장심사
2차 (최종심사)	마을공동체 위원회 심의 (사업선정 및 지원규모 최종 결정)		

○ 선정결과 : 서울시 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및 동대문구 홈페이지 게시

☐ **심사기준(안)**

심사항목		내용
사 업 타 당 성	① 사업의 필요성	♦ 공공의 과제 해결이나 마을공동체 형성 및 회복에 적합한 사업인지,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인지 여부
	② 사업의 공익성	♦ 해당 지역주민의 편익 또는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능성 ♦ 해당 지역의 마을 공동체 사업 및 모임들과의 연대 가능성
사 업 의 실 행 력 및 효 과	③ 사업 현실성	♦ 목표 및 성과측정방법의 구체적 기술 정도 ♦ 구체적 수행 가능성과 수행 후 파급 효과를 파악 ♦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여부
	④ 자발적 주민 참여	♦ 사업목적 및 제안배경 구체적 기술 ♦ 의사결정기구 구성방안 구체적 기술
	⑤ 예산 현실성	♦ 책정 예산의 효율성 및 현실성 ♦ 책정된 자부담 사업비 비율(보조금 지원액의 10%이상) ♦ 재정 자립 가능성(자부담 사업비 마련 방안 등)
	⑥ 민 관 파트너십	♦ 지역자원 협력 방안의 현실성 및 적절성 ♦ 행정기관과 적절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며 해당 단체가 효율적으로 지역적 연계를 도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보조금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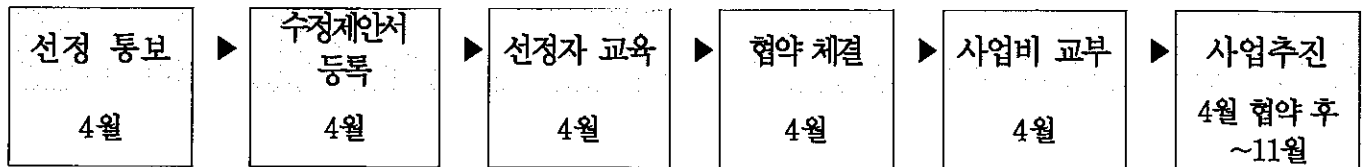
☞ 주민모임(단체) 사업 역량별, 사업내용별 차등지원

☞ 사업의 성격, 규모, 신청건수 등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가능

☞ 적격사업이 없을 시 미선정하여 마을공동체 사업 내실화

□ **선정발표 : 2019. 4월 중**

6. 선정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



□ **수정계획서(사업 실행계획서) 등록**

○ 제출시기 : 선정발표 후 7일 이내(예정)

○ 제출대상 : 심의결과 사업보조금 지원액이 변동이 있는 사업
심사위원 지적사항이 있거나 조정 의견이 있는 사업

□ **선정자 교육 실시(필수)**

○ 일 시 : 2019. 4. 18.(목)

○ 장 소 : 구청 지정장소

○ 대 상 : 사업선정 사업자(대표제안자 또는 실무자) 등

※ 필수교육으로 대표제안자 3명 중 1인 이상 및 회계담당자 필히 참석

○ 내 용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방법 등

□ **협약체결 : 2019. 4월 (예정)**

- 구비서류 : 사업실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원본, 대표제안자 3인 중 미참석자 신분증 및 도장, 보조금/자부담 통장

□ **사업비 교부**

- 사업비는 협약을 완료한 사업으로서, 필수교육 이수 및 우리은행 보조금 관리시스템 등록을 필한 경우에 한해 교부
- 협약 시 제출한 보조금 집행계획에 따라 교부

7. 사업추진지원

- 실행계획서 제출 전,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상담 지원
- 회계 및 선정자교육 실시
 - 필수교육으로 대표자 3명 중 1인 이상 필히 참석
 - 선정자교육 미이수 시 보조금 미교부
- 사업컨설팅(개별 컨설팅) 실시(필수) :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 중간컨설팅 : 2019. 7월 ~ 9월
 - 정산컨설팅 : 2019. 10월 ~ 11월
- 찾아가는 회계교육 : 사업기간 내(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마을협치팀)
 - 회계관련 상담신청 시 현장방문 및 상담
 - 보조금 집행기준,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법 교육
- 마을사업지기 정산실무교육 : 2019. 10월 중

8. 사업 선정자 시행 조건

□ 사업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 사업비 지원금 관리는 우리은행 보조금 통장 개설 및 체크카드 발급 사용
- 최종 사업실행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내용변경 시
도시전략과 마을협치팀과 사전협의하여야 함
 - 10%를 초과하는 예산 및 사업내용의 변경은 도시전략과 사전 승인 필요
- 보조금의 10%이상을 자부담 사업비로 책정, 보조금과 동일하게 집행하여
정산하여야 함
- 선정된 마을사업지기는 동대문구 및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에서
주관하는 교육, 상담·컨설팅, 사업 모니터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마을박람회 및 네트워크 파티는 필히 참여해야 함
- 사업비 지원금을 받은 주민모임, 단체는 아래사항 미준수 시 지원금을
반환조치 함
 -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 동일한 사업으로 국·시·구비를 이중으로 지원 받았을 때
 -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 되었을 때
 - 지원대상 모임(단체)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은 후 사업 추진이
미진하거나 사업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당초 실행계획서 상의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 계획 불이행 시

9. 기타 유의사항

- 사업신청에 앞서 사전상담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제반 서류를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으로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 바랍니다.
- 구체적인 일정은 추진 과정에서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선정된 사업지기는 서울시 및 우리구 마을공동체 보조사업비 집행기준, 지방보조금관리지침에 따라 사업비 편성·집행·정산 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심사와 관련된 평가내용 등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입니다.
- 사업선정 후 회계·행정교육에 대표제안자 중 1인은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 교육 미참석 시 보조금 미교부

10. 문의처

- 동대문구청 마을협치팀(☎02-2127-4982)
-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02-3394-5005)